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 확대 등〉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0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확대 (안 제1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	3
2.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11
3.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 폐지(안 제41조제4항)	19
[참 고]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도걸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4.

다. 회 부 일 : 2025. 10. 27.

II.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기금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바,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더불어, 기금 설립 취지와 상충되는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폐지, 기금 지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

여, 민간 투자의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재정경제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다.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삭제).

라.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3조제2항).

IV. 검토의견

1.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확대(안 제1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제10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u>재정경제부장관</u>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u>재정경제부장관</u> - 그밖의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정원장,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제10조) - (현행과 같음)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6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제43조) -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위원: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u>7명</u>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포함)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제43조) - (현행과 같음) - 위원: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u>8명</u>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포함)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26명’ 이내로 늘리고,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됨.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정보원장,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임.¹⁾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19명임. 그리고 교육인 4명, 공공기관장 1명, 연구원 1명 등 위촉직 위원 6명이 위촉되어 있음.²⁾

2. 국가정보원장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14.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5. 국가안보실 제3차장
16. 관세청장
17. 조달청장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당연직 (총 19명)	재정경제부장관(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위촉직 (총 6명)	교육인 4명, 공공기관장 1명, 연구원 1명

주) 위촉직은 2025년 5월 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기금운용계획,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심의회로서, 법률에서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⁴⁾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위원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총 7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자료: 재정경제부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변경됨.

개정안은 재정정책 및 민간투자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인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를 각각 1명씩 확대하는 것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중장기 국가발전 및 재정정책 연계⁵⁾를 강화하려는 취지임⁶⁾.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국가 공급망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9명 및 위촉직 위원 6명으로 정원(25명)을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공급망 및 금융 실무와 직접 연관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5)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와 유사한 성격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⁷⁾’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⁸⁾’도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해서만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별도로 추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정원 확대 필요성 및 확대에 따른 기금 운용 효율성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26명</u>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u>7명</u>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8명</u> ----- ----- -----. ③ (현행과 같음)

2.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제41조제2항) -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외 신용공여,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제1호) -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나 자금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제2호) -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제3호) - 채권의 원리금 상환(제4호) - 기금의 운용비용(제5호)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용도(제41조제2항) - (현행과 같음) -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자·투자나 자금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제2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합¹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임. 기금은 경제안보품목¹¹⁾ 및 경제안보서비스¹²⁾의 확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 대출·보증·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¹³⁾.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의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 1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 12)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지정된 것(「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5호)

13)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③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④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임¹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2025년 8월 말 기준 총 2조 9,400억원이 발행되었음.

그리고 기금은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외 신용공여,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 등의 방법으로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에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음.¹⁵⁾

14) 「공급망안정화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5) 「공급망안정화법」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4년 9월에 기금이 출범한 이후, 기금은 블라인드펀드(공급망안정화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고 프로젝트펀드(소시어스 한국투자 제1호 기업재무안정 PEF)에 150억원을 출자하여 총 1,150억원을 간접투자하였음.

[2024년 9월~2025년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실적]

(단위: 억원)

투자시기	펀드 유형	펀드명	투자금액
2024.12월	블라인드 펀드	공급망안정화펀드	1,000
2025.8월	프로젝트 펀드	소시어스 한국투자 제1호 기업재무안정 PEF*	150

* 에어인천(주)의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문 인수 프로젝트 펀드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간접투자대상은 집합투자기구에 한정되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금이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

1.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¹⁶⁾

[간접투자 대상 간 비교]

구분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조~제249조의23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45조
운용 주체 (GP)	금융위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다만, 사모펀드는 자기자본, 전문투자인력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에 등록한 법인도 가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창업기획자, 한국벤처투자 등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펀드 규모	제한없음	20억원 이상 (시행령 제23조)	100억원 이상 (법 제5조)
투자 대상	제한없음 (기관전용사모펀드(PEF)의 경우 주로 성숙단계 투자)	창업자/벤처,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창업 7년 이내 초기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투자 의무	없음	출자금의 20~40%를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없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기

1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급망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수출입은행도 같은 입장임.

금이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될 경우, 기금의 리스크 관리에 추가적인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금은 정부보증채권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운용되고 있으므로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채권 상환에 애로가 발생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음.

둘째, 기금은 공급망안정화를 목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데, 기금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투자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기금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공급망 외의 분야에 공급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금이 출자한 자금이 공급망 외의 분야에 투자되는 경우,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제2항17)에 포함되지 않게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접투자대상 확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17)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셋째, 개정안은 “집합투자기구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도 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인데,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므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속되어 있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수정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생략)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u>집합투자기구</u> (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2. ----- ----- ----- ----- ----- <u>집합투자기구</u>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u>신기술사업투자조합</u>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u>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u> 가 정하는 것-----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3.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 폐지(안 제41조제4항)

현행	개정안
○ <u>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제41조제4항)</u> －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이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삭제>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은 기업에 출자할 수 있고,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음.

그리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¹⁸⁾

18) 「공급망안정화법」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는 기금에서 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때, 기존 주주나 지분권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기금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광산 등에 민관공동투자를 한 후 기금의 주식을 처분할 때 해외기업을 포함한 기존주주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면 광물지분 취득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폐지함으로써, 기금의 투자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임.¹⁹⁾

다만, 기금이 출자한 국내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기업의 주주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경우, 정부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국산업은행법」에서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 주식 처분 시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음.²⁰⁾

19)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해외자산 지분을 매각할 때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따라서,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만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 등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 ③ (생략) ④ <u>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문의처

02)6788-5148

참고 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이후 지원 실적

□ 지원수단별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 7월
대 출	20,119	32,892
투 자	1,000	200
합 계	21,119	33,092

□ 기업규모별

(단위: 억원, %)

구 분	'24년				'25. 7월			
	승인 건수	비중	승인액	비중	승인 건수	비중	승인액	비중
대기업	11	50.0	19,560	92.6	16	55.2	29,284	88.5
중견기업	3	13.6	800	3.8	10	34.5	3,661	11.1
중소기업	8	36.4	759	3.6	3	10.3	147	0.4
합 계	22	100.0	21,119	100.0	29	100.0	33,092	100.0

주) 펀드투자는 대기업에 포함

□ 지원 분야별

(단위: 억원, %)

구 분		'24년	'25. 7월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8,700	6,050
	반도체	4,500	7,100
소계		13,200	13,150
자원안보	핵심광물	3,990	1,620
	에너지	-	11,258
소계		3,990	12,878
경제필수재	식량	810	4,100
	산업원료	3,114	1,466
	기계장비	5	1,000
소계		3,929	6,566
물류인프라·서비스		-	498
합 계		21,119	33,092

참고 2

벤처투자 동향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1. 펀드결성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비중)	'24년(비중)	증감	증감률
벤처투자조합(A)		68,031 (51.4)	57,571 (53.3)	△ 10,459	△ 15.4
	신기술투자조합	62,297 (47.0)	47,979 (44.4)	△ 14,318	△ 23.0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2,142 (1.6)	2,527 (2.3)	385	18.0
	소 계(B)	64,439 (48.6)	50,506 (46.7)	△ 13,933	△ 21.6
합 계(A+B)		132,469 (100.0)	108,077 (100.0)	△ 24,392	△ 18.4

2. 벤처투자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24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	증감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A)		53,977	45.4	66,315	51.2	12,338	22.9
그 외 조합 (a)	신기술투자조합, 회사	55,156	46.4	53,142	41.0	△ 2,015	△ 3.7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1,435	1.2	2,142	1.7	707	49.2
정책 금융 기관 (b)	산업은행	4,903	4.1	4,518	3.5	△ 385	△ 7.9
	기업은행	1,753	1.5	2,022	1.6	269	15.3
	신용보증기금	664	0.6	658	0.5	△ 6	△ 0.9
	기술보증기금	981	0.8	741	0.6	△ 240	△ 24.5
소계((a)+(b) = B)		8,301	7.0	7,939	6.1	△ 362	△ 4.4
합계(A+B)		118,870	100.0	129,538	100.0	10,668	9.0